

表示·廣告 公正化方案 推進 및 運用指針(案)

調 查 部

1. 目 的

'82.12 確定發表된 表示·廣告에 關한 公正化方案이 '83.1~3月間 集中弘報期間을 거쳐 4月 1日부터 本格 實施됨에 따라, 이의 適用과 處理를 위한 綜合推進計劃을 樹立 實施함으로써 表示·廣告 公正化가 效果의으로 達成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推進計劃

가. 制度改善

① 多樣한 各種 表示·廣告에 對한 法令을 整備하여 表示·廣告의 公正化方案과 一致되도록 함.

② 關係部處(經濟企劃院, 商工部, 農水產部 保社部, 特許廳, 工振廳) 實務作業班을 編成하여 具體的 作業推進

③ 先進外國의 制度를 調查 比較 分析하여 우리나라의 制度改善에 反映

나. 表示·廣告 公正化協議會(假稱) 構成

制度的으로나 行政的으로 規制하고 있는 各種 表示·廣告에 關한 行政處分 등의 統一性을 期하기 爲하여 關係部處 擔當官으로 構成하는 公正化協議會를 構成 運營함으로써 部處別 表示·廣告行政에 있어 一貫性 있는 制度樹立과

施行을 하고자 함.

다. 業界 自律規約 實施擴大

① 業種別 組合 또는 協會等 關聯團體를 통한 公正競爭規約 實施誘導

② 業種別 自律調整 協議機構 設置 誘導

라. 國民生活과 直結되는 分野의 表示·廣告의 公正化

積極 推進 및 違反事例 嚴罰

食品, 醫藥品, 衣類, 化粧品, 不動產等 國民生活에 直結되는 表示·廣告에 對한 綜合對策樹立 實施

3. 違反事件에 對한 處理運用指針

가. 基本方向

① 表示·廣告의 不正事例는 一般國民이 그 事實을 쉽게 알 수 있도록 公開謝過廣告를 原則으로 함.

② 謝過廣告 掲載時 當該 表示·廣告媒體와 同一한 方法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

나. 國民生活과 直結되는 分野에 對한 集團束

①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경우 그 被害가 廣範圍하고 消費者의 利益을 顯著히 沮害하고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이를 濫用行爲로 보아 重罰(1年以下의 징역 또는 7천만원 以下의 罰金)까지 하므로써 他會社에 對한 事前 戒告의인 效果를 갖도록 함.

② 不良食品追放 綜合對策樹立：表示·廣告와 關聯하여 不良食品追放을 爲한 具體的인 方案을 別途 樹立 實施함.

③ 食品, 醫藥品, 化粧品, 衣類, 不動産 分野의 表示·廣告 公正化를 集中的으로 推進한다. 특히 다음 各號와 같이 表示·廣告하므로써 當該商品의 成分·含量·品質·規格·原產地等 去來內容에 關하여 消費者를 誤認시킬 수 있는 表示·廣告行爲를 重點的으로 規制한다.

㉑ 製造日字, 有效期間, 製造元의 表示·廣告가 애매하거나 消費者가 쉽게 알아 볼 수 없도록 表示되어 있는 경우

㉒ 原材料에 果肉 또는 果汁이 전혀 包含되어 있지 않거나, 包含되었다 하더라도 극히 微量包含된 清涼飲料, 우유類, 아이스크림 및 水果類에 마치 이러한 果汁 또는 果肉이 大部分 使用되고 있는 것같이 表示하고 있는 경우

㉓ 外國의 國名, 地名, 國旗, 紋章, 其他 이 와 類似한 表示

㉔ 權限없이 外國의 事業者 또는 디자이너의 姓名, 名稱 商標의 表示

㉕ 文字의 全部 또는 主要部分이 外國語로 表示되어 있는 경우(外國語를 그 소리대로 한글로 表示하는 경우 그 表記가 一般化되어 있지 않아 消費者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포함)

㉖ 根據없이 國內外모델을 使用하는 경우

㉗ 不動産 分讓廣告時 入住時期, 代金支拂方法, 位置說明, 內部構造 기타 去來內容 및 條件等에 關하여 애매하거나 虛僞 誇張하여 表示하는 行爲

다. 處理運用指針

① 違反事實이 現存하고 있는 경우：現在 違反事實이 繼續되고 있는 顯著하고 明白한 違反行爲는 即時 中止시키고 必要한 是正措置를 取함.

이미 完了된 違反行爲는 當該違反事項에 對한 是正措置와 아울러 再發防止를 爲해 必要한 措置를 하고 違反의 可能性이 높은 것은 發生 原因除去에 重點을 두어 制度的으로 改善토록 함.

② 違反 事件에 對한 處理指針

警告

○ 去來內容 및 去來 條件에 關한 違反程度가 輕微하고 消費者 被害가 극히 制限的인 경우

○ 當該商品의 市場 占有率이 낮고 消費者 誤認의 憂慮가 적은 경우

○ 曖昧模糊한 表現을 使用하여 消費者의 判斷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輕微한 表現

是正 勸告, 是正命令(一般事項)

○ 商品의 內容에 對하여 事實보다 顯著히 優良하다고 오인시키는 경우

○ 去來條件에 대하여 事實보다 顯著히 有利하다고 誤認시키는 경우

○ 반드시 表示해야 할 重要事項을 表現하지 않으므로써 消費者를 誤認케 한 경우

告發

○ 競爭事業者를 誹謗하므로써 公益을 해치거나 그 結果 相對會社의 事業活動에 크게 損害를 끼친 경우

○ 生必品等 國民生活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商品(食品, 醫藥品等)에 關하여 虛僞表示 廣告等を 함으로써 國民의 健康과 安全을 크게 沮害한 경우

○ 公正去來法을 1次 違反하여 是正措置를 받은 會社(者)가 再犯을 하는 경우

③ 是正措置에 따른 公開謝過方法

會社가 既히 表示·廣告에 使用하였던 媒體(TV, 라디오, 신문等)와 同一한 媒體를 利用하여 消費者나 相對會社에게 公開謝過토록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